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개정일 2024.02.16	개정일 추가
제6조(납입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신설) ② ~ ⑤ (생략)	제6조(납입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 다목에 따라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협회 표준안 준용 (소득세법 개정사항)
제19조(연금의 지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2. (생략) ② ~ ⑦ (생략)	제19조(연금의 지급)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협회 표준안 준용 (조문 정비)
제20조(회사의 원천징수) ① (생략) 1.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세액계산은 「소득세법」제64조의4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제20조(회사의 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1.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세액계산은 「소득세법」제64조의4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7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협회 표준안 준용 (소득세법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
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가. ~ 나. (생략) 2. (생략) ② ~ ③ (생략)	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1. 이 약관은 <u>2023년 3월 13일</u> 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u>2024년 2월 16일</u>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변경